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3일

노 원 구 청 장

○ 폐지 대상 도로명주소

연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1	공릉동 380-31	동일로197길 97	2011.7.29.	2026.9.3.	철거된 건축물의 건물번호 폐지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(☎2116-360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에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